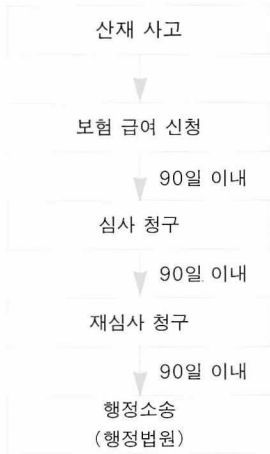


# 산재급여 신청서 작성예시

## 1. 산재심사 처리과정



### 1) 보험급여 신청

- ①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한다.
- ②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하면 별도의 진정서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 2)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요양비 지급, 장해급수 결정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 공단으로 청구

### 3) 재심사 청구

: 심사 청구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동부 산재 심사위원회에 청구한다.

※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

: 변호사, 공인노무사, 수급권자의 가족

## 2. 요양신청서 작성

- ①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신청서작성 (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 ②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여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 ③ 산재치료가 연기되는 경우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치료병원에 제출한다.(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연기신청서)
- ④ 산재치료가 종결되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산재신청    ▶    연기신청    ▶    장해신청

▶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작성하여 피해자가 직접 청구한다.



#### 4.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

##### 가. 개설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결과에 불만이 있을때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불복의 이유를 법률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관철하고자하는 것이다. 산재급여심사청구제도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라는 2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심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심사청구의 경우에는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 앞으로 하여 보험급여의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90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는 처분을 받은 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88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위 심사청구제도를 적용하므로써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노동부 심사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90조 3항)

#####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권자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가 청구할 수 있다.

##### - 대리인

변호사, 공인 노무사, 수급권자 가족이 대리할 수 있다.

##### 나. 심리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의 경우에는 노동부 심사위원회의 결정

(재결)한다.

예문) 심사청구서(추가상병)

[별지 제128호 사식] (알 면)

심 사 청 구 서				보험번호
부 수 인	신청인(성명)	신청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신청인(직업)
대 리 인	출생 연도	신청인(성명)	신청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
행위 방법	요양 연도	신청인(성명)	신청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
근로처	요양 연도	신청인(성명)	신청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상 병 내 역	요양 연도	신청인(성명)	신청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요 구 사항	요양 연도	신청인(성명)	신청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신청인(직업)	신청인(성명)	신청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신청인(직업)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성명)	신청인(성명)	신청인(성명)	신청인(성명)	신청인(성명)

예문)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심사청구취지 및 이유서**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부천시지장(이하"결정기관"이라 한다)이 ○○. 9. 3일 피재 근로자 이○○(이하"피재자"라 한다)에서 행한 추가상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동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피재자는 ○○. 7. 24일 10:23분경 삼성동 ○○건설 아파트 작업현장에서 지하2층에 이단품을 붙이던 중 철근일하는 사람들이 철근을 세우기 위하여 30cm 가량의 철근 도바리를 끼워 놓아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망치로 치는 중에 이단품이 떨어져 피재자의 발등을 찍으면서 아래로 추락하면서 무릎과 허리를 다쳐 순화의원(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서 요양가료하고, 국립의료원(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번지)으로 전원하여 진단명 "우측부십자인대파열, 우 2중족골 기저부골절,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및 가료하고 현재는 현대정형외과(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서 요양중에 있으나, 불안감, 초조감을 호소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야에서 불면증상이 심하여 새벽까지 병원주위를徘徊하는 증상이 있고 또한 성적발기부전증을 계속호소하고 있어 정신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여, 부천기독병원(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서 검진결과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상태"로 진단받아 결정기관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상태"는 신경계통의 장애로서 피재자의 요양승인 상병명 "우측부 십자인대파열, 우 제2중족골 지지

예문) 장애등급 조정

I. 청구 취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장(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이라 한다)이 ○○. 1. 21. 자로 피재근로자 최○○(이하 "피재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 제8급 00호 처분을 취소하고 피재근로자에 장애 상태에 상응하는 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II. 청구 이유

1. 피재근로자는 ○○. 9. 1.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완관절골골절, 우측협골절, 혈흉 다발성늑골골절(우측 6, 9, 10번째), 좌완관절 주상골 및 유허 골골절, 좌측측두골골절, 외상성시신경위축(우안), 차아탈구, 좌완관절부수조관혈착중, 좌측내장중, 요부염좌, 제5-6경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 12. 27.까지 수술적 치료를 받는 등 산재요양을 받아 오다가 치료종결되자 결정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거 장애보상을 청구하였던바, 결정기관에서는 피재근로자의 장애상태에 대한 장애등급을 제8급 제100호 적용 처분하였으나,

2. 그러나 청구인은 결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1) ○○. 11. 24.자로 결정기관에 제출한 장애보상청구서 뒷면에 나타나 있는 정형외과 담당주치의의 진단서상의 장애상태 및 운동범위에 소견 내용은 좌 완관절(수관절)의 운동범위 굴곡20도, 신전15도라고 되어 있으며, 신경외과 담당주치의의 소견내용은 "장애상태 : 두통 및 우울증 소견이 있음, 기억력과 집중력의 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무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여 부평 ○○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장애감정을 다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2) 따라서 피재근로자의 장애상태는 정형외과의 경우 수관절의 정상운동 각도인 굴곡115도-120도(정상운동범위 120도-130도)인 것과 비교하여 보면 피재근로자의 수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의 1/4정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 실시행령 별표2 신체장애등급표 제8급 6항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며
- (3) 신경외과의 경우 두통 및 우울증 소견과 기억력 및 집중력의 장애로 부평○○ 병원에서 장애 감정을 받은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장애등급표상 제7급 제4항)에 해당 된다고 하였습니다.
- (4) 그러므로 정형외과의 장애등급 제8급과 신경외과의 장애등급 제7급을 병합하면 제6급 00호의 장애등급에 사료됩니다.

3. 여하튼 결정기관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장애등급 제8급 제00호를 적용 처분하였음은 너무나 부당하며, 별첨된 담당주치의의 진단서에 의한 장애상태 및 운동범위에 관한 소견으로 보아 청구취지와 같이 장애등급 제8급 제00호 적용처분을 취소하고 피재근로자의 장애상태에 상응하는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급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하고자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으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생략)

○○. 4. 15.

피재근로자 최 ○ ○ (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귀하



부몰절"과 연관성이 없어 불승인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2.요양상병과 추가상병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재자는 ○○. 7. 24일 사고 당시 우측슬관절과 허리를 다쳤으며, 결정기관에서는 피재자의 상병명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기왕증의 제발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이 기존질 환인 관계로 신경계통의 장애인 "외상후 스트레스상태"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재자는 ○○. 7.24일 우측 슬관절과 요추부분을 같이 다쳤으며, 또한 피재자의 상병"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피재자의 기왕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에 동반하여 제발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동상병이 피재자의 ○○. 7.24일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상병으로 인하여 국립의료원(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번지)에서 ○○. 11. 23일 후외측 고정술을 시행받고 현재까지 물리치료 등으로 요양하고 있으나 증세의 호전이 더더 완치된 상태가 아니며, 사고이후 현재 불면증, 환상, 환청, 초조감, 불안감, 다리저림, 안면근육경련, 성적능력저하의 상태를 보여 추가상병 신청한 것이므로 당초의 사고로 인하여 요양중에 계속되는 통증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인 고통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동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III. 결론

피재자는 피재당시 우측 슬관절과 요추부분을 다쳤으며, 결정기관에서는 피재자의 상병명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기왕증의 제발이라고 하나, 이는 피재자가 95년도에 산재사고로 요추를 다친 것이 ○○. 7. 24일 사고를 당하기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같은해 7. 24일 사고로 인하여 가장 막 악화된 것이므로 기왕증의 제발이라고 보기 보다는 사고 당시에 다친 것이 기왕증과 더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요양도중 계속되는 통증 및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현재 불면증, 환상, 환청, 초조감, 불안감, 다리저림, 안면근육경련, 성적능력저하의 상태를 보이고 있어 검진결과 추가상병인 "외상후 스트레스 상태"로 진단한 것이므로 이는 피재자가 피재로 인하여 요양중 통증과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한 것이므로 추가상병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 소견서(○○의료원 정형외과 ○○○)
- 진단서(○○정형외과 ○○○)
- 진단서(부천○○병원 ○○○)
- 추가상병불승인통지(근로복지공단○○지사)

○○. 11. 6

피재자 이 ○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